

장애아동의 생활보조금 자격여부 판단을 위한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소득의 인정에 적용되는 사회보장국 규칙과 자격 대상이 될 경우, 그 금액

2016 년 7 월, Pub #5017.03 - Korean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원은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인정"되거나 귀속됩니다. 이는 곧 부모 소득 및 재원의 일부가 생활보조금의 자격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간행물에서는 인정 규칙, 특히 장애아동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해당 장애아동이 생활보조금의 자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모 소득을 얼마나 인정하고 생활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실제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보장국의 "소급 월간 회계(Retrospective Monthly Accounting)" 제도와 귀하의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오직 생활보조금 대상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의 소득 및 자원만 포함시킵니다.

사회보장국은(Social Security) 생활보조금 대상 아동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의 소득 및 재원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생활보조금 아동과 함께 사는 양부모의 소득은 [포함됩니다.](#)¹

소급 월간 회계

사회보장국은 생활보조금 자격대상 기간 중 소급 월간 회계를 사용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절 416.420. 이는 곧 해당 월에 받은 소득으로 2 개월 후의 생활보조금 금액을 결정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 월에 받은 소득은 3 월 생활보조금 수표의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해당 월에 소득이 너무 많아서 생활보조금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생활보조금은 해당 월에 보류됩니다. 따라서, 1 월의 소득이 너무 많아서 귀하의 자녀가 생활보조금 자격대상이 되지 않으면, 1 월의 생활보조금은 보류됩니다. 귀하의 소득이 이후 11 개월 동안 자녀의 생활보조금 자격에 충분할 만큼 낮아지게 되면 새로운 신청을 할 필요 없이 귀 자녀의 자격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²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323(b). 만약 12 개월 동안 귀하의 자녀가 생활보조금의 자격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소득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보류는 해지로 바뀝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335. 해지될 경우, 다시 생활보조금을 받으려면 귀하의 자녀에 대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소득 변경 보고 의무

"소급 월간 회계" 작업을 위해, 사회보장국은 귀하의 소득이 변경된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변경 내용을 사회보장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708(c), [416.714.](#)³ 만약 귀하의 1 월 소득이 12 월 소득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2 월 10 일까지 이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합니다(5 일까지 신고하면 더 좋음). 귀하의 1 월 소득이 12 월 소득과 동일하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장국이 귀하의 1 월 소득에 대한 변경 신고서를

생활보조금 부모-자녀 인정

받으면, 사회보장국은 변경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1 월 소득의 변경분을 반영하도록 귀하의 3 월 생활보조금 수표를 상하 조정합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소득 변경 신고서 샘플을 동봉했습니다. 귀하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소 주소 및 “re” 아래 모든 정보를 작성함으로써 신고서 양식을 부분적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합니다. 그 다음 부분적으로 작성한 양식을 많이 복사하십시오.

매월 소득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서명하는 양식의 날짜란에, 보고월을 기입하고, 하단의 소득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그 다음 양식에 서명하십시오. 부모 중 한 명만 보고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을 복사하거나 두 번째 양식에 작성하여 사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사회보장국에 보내는 신고서에 급여 명세서 또는 수표책 보관본의 복사본을 첨부하십시오. 기록을 위해 보관하는 사본에 원본을 첨부하십시오. 급여 명세서 원본은 사회보장국에 보내지 말고 [복사본](#)⁴만 보내십시오. 사회보장국에 보내지는 우편물 중 분실되는 우편물이 많습니다. 급여 명세서 원본 및 수표 보관본의 원본은 신고서 사본에 첨부하여 연례 검토 시 사회보장국이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관하는 소득변경 신고서 사본에 서신을 [우편함](#)⁵에 넣은 날짜를 적으십시오. 사회보장국에 보내는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또한, 사회보장국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대화를 나눈 날짜, 대화를 나눈 상대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은 3 홀 바인더에 보관하고 귀하가 사회보장국으로 보낸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도록 권장합니다. 모든 것을 노트북이나 바인더에 철하십시오.

아동에게 인정되지 않는 자원 및 소득

사회보장국은 다음 사항을 자녀의 생활보조금 자격대상 판단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모의 연금 또는 은퇴 펀드(개인 은퇴 계좌, KEOGH, 또는 과세 이연 연금) (비록 이 펀드를 현금화할 수 있을지라도 인정하지 않음)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202(b).
- 소기업 재고 및 은행 계좌 운용 또는 작업 시나 직장에 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 장비 또는 두 번째 차량 등 자가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자원 42 미국 법전(U.S.C., United States Code) 절 1382b(a)(3).

사회보장국은 다음 사항을 자녀의 생활보조금 자격대상 판단의 목적을 위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장애아동에게 가정내 지원 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가 받는 소득. 가정내 지원 서비스 소득은 생활보조금 면제 소득입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61(a)(16).
- 지역사회 우선 선택 옵션(CFCO, Community First Choice Option)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가정내 지원 서비스는 Medi-Cal 의 적용 대상이며 부모가 받는 소득은 Medi-Cal 면제 소득입니다. 또한, 아동의 생활보조금에 대한 재정적 자격여부 판단 목적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자원과 해당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표 금액은 해당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의 Medi-Cal 자격대상을 판단하는데 다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⁶.

가정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정내 지원 서비스 공정 심의회 및 자가평가 패키지를 참조하십시오(IHSS Fair Hearing and Self-Assessment):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1301.htm>

인정 계산

부모 대 자녀 인정 계산은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60, 416.1161, 416.1165 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임금과 급여 또는 [자영업](#)⁷ 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비근로소득"입니다. 중여, 실업수당, 주 장애인 혜택, 사회보장 혜택은 모두 비근로소득의 예입니다. 부모의 비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모의 근로소득 또한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순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 소득은 공제 이전에 받은 금액입니다.⁸

사회보장국은 생활보조금 아동 또는 장애아동 이외의 가정 내 각 비장애 아동에 대한 할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귀하는 먼저 모든 비근로소득에서 할당액을 공제한 다음, 해당 할당액을 다 공제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사례 참조). 공제 목적을 위한 "자녀"에는 동일한 가구에서 사는 21 세 미만의 자녀와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861 의 기준 하의 정규 학생인 21 세 자녀를 포함합니다. 각 비장애 아동에 대한 할당액은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FBR, Federal Benefit Rate) 및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 사이의 차이입니다.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생활보조금 수표의 일부입니다. 생활보조금 수표의 나머지는 주 정부 [자금입니다.](#))⁹ 자격 대상이 아닌 아동의 자체 소득이 있으면 할당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자격 대상이 아닌 학생이 정규학생이라면, 생활보조금 아동 또는 22 세 미만의 청년에 대해 면제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소득을 면제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12(c)(3), 416.1160(d), 416.1161(c), 416.1163(b), 416.1165, 416.1861.

가정 내 비장애 아동에 대한 공제 후에는 임의 소득 불인정 \$20.00 달러를 먼저 비근로소득(비근로소득이 있거나 잔액이 있는 경우)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비근로소득으로 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음에는

생활보조금 부모-자녀 인정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를 합니다. 먼저 \$65.00 달러를 공제하고 잔액의 50%를 공제합니다. 그 다음 남은 비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을 더합니다. 합계로부터,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한 부모일 경우) 또는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두 부모이거나 가정 내 부모와 양부모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공제합니다. 잔액은 해당 아동의 비근로소득으로서 장애 아동에 대해 인정됩니다. 가정에 한 명 이상의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인정된 금액은 해당 자녀에게 분배됩니다.

해당 아동의 생활보조금은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생활보조금 수령인의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모든 아동 지원의 2/3 가 포함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24(c)(11). 둘째, 2016 년 해당 아동이 학생이고 22 세 미만이라면, 사회보장국은 매월 근로소득에서 처음 \$1,780.00 달러를 그리고 연간 합산으로는 최대 \$7,180.00 달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12\(c\)\(3\)¹⁰](#). 이는 또한 근로소득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제에 추가됩니다.

인정규칙의 적용 사례

빈 연습용지가 이 메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래 참조). 여러 장의 연습용지를 작성하여 귀 자녀의 생활보조금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 "A"와 "B"에 따라 작성한 2 장의 연습용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계산은 2016 년 수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숫자와 글자는 인정 연습용지의 숫자 및 글자에 해당합니다.

| | | |
|---|---|---|
| 2016 년 1 월 개인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33.00 달러입니다. | 2014 년 1 월 개인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21.00 달러입니다. | 2015 년 1 월 개인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33.00 달러입니다. |
|---|---|---|

생활보조금 부모-자녀 인정

| | | |
|--|--|--|
| 2016 년 1 월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100.00 달러입니다. | 2014 년 1 월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082.00 달러입니다. | 2015 년 1 월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100.00 달러입니다. |
| 2016 년 1 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는 (Income Deduction for Nondisabled Child) \$367.00 달러입니다. | 2014 년 1 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는 \$361.00 달러입니다. | 2015 년 1 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소득공제는 \$367.00 달러입니다. |
| 2016 년 1 월 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SSI Rate for Disabled Child) \$796.40 달러입니다. | 2014 년 1 월 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784.40 달러입니다. | 2015 년 1 월 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796.40 달러입니다. |
| 2016 년 1 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944.40 달러입니다. | 2016 년 1 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932.40 달러입니다. | 2015 년 1 월 시각장애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금 요율은 \$944.40 달러입니다. |

사례 A: 애플 씨 부부는 장애가 있는 아담을 포함하여 자녀가 셋입니다. 애플 씨의 총 근로소득은 월 \$2,000.00 달러입니다. 애플 씨 부인은 파트 타임으로 일하며 총 소득은 월 \$1,000.00 달러입니다. 이 부부는 또한 월 \$30 달러의 석유 리스 소득을 받습니다.

사례 A 에서 생활보조금 아동에게 적용되는 부모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1. 이 가정의 석유 광물권 리스로부터 얻는 비근로소득 \$30.00 달러를 기입합니다.

2. 이 가정에는 아담 이외에 2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자녀들의 소득은 없습니다. 이 가정의 2016 년 비장애 아동에 대한 공제는 각각 \$367.00 달러입니다. 비장애 아동에 대한 총 공제액인 \$734.00 달러를 기입하십시오.
3. 비근로소득에서는 임의소득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4. 물론 계산이 가능한 총 비근로소득은 0 입니다.
5. 애플 씨 부부의 총 합산근로소득은 \$3,000.00 (\$2,000.00 + \$1,000.00)달러입니다.
6. 이 가정의 비장애 아동에 대한 공제의 미사용 잔액 (#1 - #2)은 \$704.00 달러입니다.
7. 위의 3 번에서 임의 소득 불인정 \$20.00 달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0 달러 공제 전체액을 여기에 기입합니다.
8. 다음 공제는 근로소득 공제 \$65.00 달러입니다.
9. 소계는 \$2,211.00 (\$3,000.00 - \$704.00 - \$20.00 - \$65.00)달러입니다.
10. 9 번의 절반인 \$1,105.50 달러를 기입합니다.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은 \$1,105.50 달러입니다.
12. 위의 4 번에서 계산이 가능한 비근로소득은 없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총 소득 또한 \$1,105.50 달러입니다.
13. 2016 년 부부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100.00 달러입니다.

생활보조금 부모-자녀 인정

14. 장애아동에 대해 인정되는 금액은 전체 포함가능 소득 -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 또는 \$5.50 달러입니다.

사례 A 에서 아동 보조금 계산하기:

- a. 2016 년 1 월 장애아동 생활보조금 수준은 \$796.40 달러입니다.
- b. 인정되는 금액은 \$5.50 달러이며 다른 비근로 소득은 없습니다 (Title II 사회보장국 부양가족 혜택).
- c. 이 예에서 아동 지원금은 없습니다.
- d. 해당 아동의 소득에서 임의소득 불인정 \$20.00 달러를 공제합니다.
- e. 이 예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 f. 해당 아동의 계산이 가능한 총 소득은 \$0 (\$5.50 - 해당 아동의 공제 가능 \$20.00 임의소득 공제)달러입니다.
- g. 해당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표액은 \$796.40 달러가 될 것입니다.

사례 A

월간 부모-아동 생활보조금 인정 연습용지

부모의 소득:

| | | |
|--------------------------------|------------|--------|
| 1. 비근로 소득 | \$30.00 | \$0.00 |
| 2. -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 ¹ | \$(734.00) | \$0.00 |

¹ 2013 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 이었으며, 2014 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 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 | | |
|---|------------|-------------|
| 3. - \$20 달러 임의소득 불인정 | \$(20.00) | \$0.00 |
| 4. 계산이 가능한 총 비근로소득 | \$0.00 | \$0.00 |
| 5. 총 근로소득 | \$3,000.00 | \$0.00 |
| 6. - 다른 아동에 대한 잔액 (2 - 1)² | \$(704.00) | \$0.00 |
| 7. - 임의소득 불인정 잔액 | \$(20.00) | \$0.00 |
| 8. - \$65.00 의 인정하지 않는 근로소득 | \$(65.00) | \$0.00 |
| 9. 소계 | \$2,211.00 | \$0.00 |
| 10. - #9 소계의 절반(50%) | \$1,105.50 | \$0.00 |
|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 | \$0.00 | \$1,105.50 |
| 12. 소계 - 계산이 가능한 소득 | \$0.00 | \$1,105.50 |
| 13. - 개인 또는 부부 FBR³ | \$0.00 | \$(1100.00) |

공제가 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 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² 2013 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 이었으며, 2014 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 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 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 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³ 2013 년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10.00 입니다. 2014 년에는 \$721.00, 2015 년과 2016 년에는 \$733.00 입니다. 2013 년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066.00 이었고 2014 년에는 \$1082.00 그리고 2015 년과 2016 년에는 \$1100.00 이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 | | |
|--------------------------------|--------|--------|
| 14. 장애아동에 인정되는 금액 ⁴ | \$0.00 | \$5.50 |
|--------------------------------|--------|--------|

아동 보조금 계산:

| | | |
|-------------------------------------|-----------|----------|
| a. 아동의 생활보조금 <u>수준</u> ⁵ | \$0.00 | \$796.40 |
| b. 위의 #14 에서 인정된 금액 + 기타 비근로소득 | | |
| | \$5.50 | \$0.00 |
| c. 아동 지원금의 2/3 ⁶ | \$0.00 | \$0.00 |
| d. - \$20.00 임의소득 불인정 | \$(20.00) | \$0.00 |
| e. 포함 가능 근로 <u>소득</u> ⁷ | \$0.00 | \$0.00 |
| f. 아동의 전체 포함 가능 소득 | \$0.00 | \$0.00 |
| g. 아동의 생활보조금 | \$0.00 | \$796.40 |

사례 B: 베티 바튼은 장애 아동인 빌을 키우는 한 부모입니다.
빌은 아버지로부터 매월 \$225.00 달러의 자녀 양육비를

⁴ 장애 아동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인정 금액을 해당 장애 아동들에게 분배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⁵ 연방정부 혜택 요율 및 주 보조금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생활보조금 장애아동 요율은 2013 년에 \$773.40, 2014 년에 \$784.40, 2015 년 및 2016 년에 \$796.40 입니다. 시각장애 아동은 2013 년에 \$921.40, 2014 년에 \$932.40, 2015 년과 2016 년에 \$944.40 입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⁶ 아동 지원의 2/3 만 포함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⁷ 2013 년 월간 면제액은 \$1,730.00, 연간 면제액은 \$6,960.00 이었습니다. 2014 년 월간 면제액은 \$1750.00, 연간 면제액은 \$7,060 이었습니다. 2015 년과 2016 년 월간 면제액은 \$1780.00, 연간 면제액은 \$7180.00 이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모두 공제액을 공제받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받습니다. 바튼은 월 \$2,000.00 달러의 공제 이전 소득을 받습니다.

사례 B 에서 생활보조금 아동에 해당하는 부모의 소득금액 계산하기:

- 1-4. 이 예에서 비근로 소득은 없습니다.
5. 총 근로소득은 월 \$2,000.00 달러입니다.
6. 이 예에서 이 가정에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7. 비근로 소득이 없으므로, 임의소득 불인정 \$20.00 달러 전체를 공제합니다.
8. 다음 공제는 근로소득 공제 \$65.00 달러입니다.
9. 소계는 \$1,915.00 달러입니다. ($\$2,000.00 - \20.00 (7 번) - $\$65.00$ (8 번) 불인정.
10. \$1,915.00 달러의 절반은 \$957.50 달러입니다.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 또한 \$957.50 달러입니다.
12. 이 예에서 비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총 소득은 \$957.50 달러입니다.
13. 2016 년 한 부모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733.00 달러입니다.
14. 빌에 대해 인정되는 금액은 \$224.50 달러이며, 이는 \$957.50 달러와 \$733.00 달러의 차이입니다.

사례 B 에서 아동의 보조금 계산하기:

- a. 이 아동의 2016 년 1 월 보조금 수준은 \$796.40 달러입니다.
- b. 인정된 금액은 \$224.50 달러입니다. Title II 사회보장 부양가족 혜택과 같은 다른 비근로소득은 없습니다.
- c. 이 예에서 빌은 같이 살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자녀 양육비로 매월 \$225.00 달러를 받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자녀 양육비의 2/3 만 포함하므로, \$225 달러의 1/3 또는 \$75 달러를 \$225 달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50 달러는 해당 아동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d. 해당 아동의 소득에서 임의소득 불인정 \$20.00 달러를 공제합니다.
- e. 이 예에서 해당 아동은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 f. 해당 아동의 계산 가능한 비근로소득은 \$354.50 (\$224.50 + \$150.00 - \$20.00)달러입니다.
- g. 이 아동의 생활보조금은 \$441.90 달러입니다 (\$796.40 - \$354.50).

사례 B

월간 부모-아동 생활보조금 인정 연습용지

부모 소득:

| | | |
|-----------|--------|--------|
| 1. 비근로 소득 | \$0.00 | \$0.00 |
|-----------|--------|--------|

| | | |
|---|------------|------------|
| 2. -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 ⁸ | \$0.00 | \$0.00 |
| 3. - \$20 임의소득 불인정 | \$(20.00) | \$0.00 |
| 4. 계산이 가능한 총 비근로소득 | \$0.00 | \$0.00 |
| 5. 총 근로소득 | \$2,000.00 | \$0.00 |
| 6. 다른 아동에 대한 잔액 차감 ⁹ | \$0.00 | \$0.00 |
| 7. - 임의소득 불인정 잔액 | \$(20.00) | \$0.00 |
| 8. - \$65.00 의 인정하지 않는 근로소득 | \$(65.00) | \$0.00 |
| 9. 소계 | \$1,915.00 | \$0.00 |
| 10. - #9 소계의 절반(50%) | \$(957.50) | \$0.00 |
|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 | \$0.00 | \$957.50 |
| 12. 소계 - 계산이 가능한 소득 | \$0.00 | \$957.50 |
| 13. - 개인 또는 부부 FBR¹⁰ | \$0.00 | \$(733.00) |

⁸ 2013 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 이었으며, 2014 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 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 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 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⁹ 2013 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 이었으며, 2014 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 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 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 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¹⁰ 2013 년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 \$710.00 이고, 2014 년은 \$721.00, 그리고 2015 년과 2016 년은 \$733.00 입니다. 2013 년 부부 연방정부 혜택

14. 장애아동에 인정되는 금액 [11](#) \$0.00 \$224.50

아동 보조금 계산:

| | | |
|------------------------------------|-----------|----------|
| a.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준 12 | \$0.00 | \$796.40 |
| b. 위의 #14 에서 인정된 금액 +기타 비근로소득 | | |
| | \$224.50 | \$0.00 |
| c. 아동 지원의 2/3 13 | \$150.00 | \$0.00 |
| d. - \$20.00 임의소득 불인정 | \$(20.00) | \$0.00 |
| e. 포함 가능 근로 소득 14 | \$0.00 | \$0.00 |
| f. 아동의 전체 포함 가능 소득 | \$0.00 | \$354.50 |
| g. 아동의 생활보조금 | \$0.00 | \$441.90 |

요율은 \$1066.00 이었고 2014 년에는 \$1082.00 그리고 2015 년과 2016 년에는 \$1100.00 이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¹¹ 장애 아동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인정 금액을 해당 장애 아동들에게 분배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¹² 연방정부 혜택 요율 및 주 보조금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생활보조금 장애아동 요율은 2013 년에 \$773.40, 2014 년에 \$784.40, 2015 년 및 2016 년에 \$796.40 입니다. 시각장애 아동은 2013 년에 \$921.40, 2014 년에 \$932.40, 2015 년과 2016 년에 \$944.40 입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¹³ 아동 지원의 2/3 만 포함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¹⁴ 2013 년 월간 면제액은 \$1,730.00, 연간 면제액은 \$6,960.00 이었습니다. 2014 년 월간 면제액은 \$1750.00, 연간 면제액은 \$7,060 이었습니다. 2015 년과 2016 년 월간 면제액은 \$1780.00, 연간 면제액은 \$7180.00 이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모두 공제액을 공제받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월간 부모-아동 생활보조금 인정 빈 연습용지

부모의 소득:

| | | |
|---------------------------------------|-----------|--------|
| 1. 비근로 소득 | \$0.00 | \$0.00 |
| 2. -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 ¹⁵ \$() | \$() | \$0.00 |
| 3. - \$20 임의소득 불인정 | \$(20.00) | \$0.00 |
| 4. 계산이 가능한 총 비근로소득 | \$0.00 | \$0.00 |
| 5. 총 근로소득 | \$0.00 | \$0.00 |
| 6. 다른 아동에 대한 잔액 차감 ¹⁶ | \$() | \$0.00 |
| 7. - 임의소득 불인정 잔액 | \$(20.00) | \$0.00 |
| 8. - \$65.00 의 인정하지 않는 근로소득 | \$(65.00) | \$0.00 |
| 9. 소계 | \$0.00 | \$0.00 |
| 10. - #9 소계의 절반(50%) | \$() | \$0.00 |
| 11. 계산이 가능한 총 근로소득 | \$0.00 | \$0.00 |
| 12. 소계 - 계산이 가능한 소득 | \$0.00 | \$0.00 |

¹⁵ 2013 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 이었으며, 2014 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 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 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 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¹⁶ 2013 년 1 월 비장애아동에 대한 공제는 \$356.00 이었으며, 2014 년에는 \$361.00, 2015 년과 2016 년에는 \$367.00 이었습니다. 다른 아동에 대한 공제가 가능 금액은 아동의 소득으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제액은 #6 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 | | |
|---|--------|--------|
| 13. - 개인 또는 부부 FBR¹⁷ | \$0.00 | \$() |
| 14. # 장애아동에 인정되는 금액 | \$0.00 | \$0.00 |

아동 보조금 계산

| | | |
|--------------------------------|-----------|--------|
| a.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준 | \$0.00 | \$0.00 |
| b. 위의 #14 에서 인정된 금액 + 기타 비근로소득 | | |
| | \$0.00 | \$0.00 |
| c. 아동 양육비의 2/3 | \$0.00 | \$0.00 |
| d. - \$20.00 임의소득 불인정 | \$(20.00) | \$0.00 |
| e. 포함 가능한 근로소득 | \$0.00 | \$0.00 |
| f. 아동의 전체 포함 가능 소득 | \$0.00 | \$0.00 |
| g. 아동의 생활보조금 | \$0.00 | \$0.00 |

¹⁷ 2013 년 개인 연방정부 혜택 요율 \$710.00 이고, 2014 년은 \$721.00, 그리고 2015 년과 2016 년은 \$733.00 입니다. 2013 년 부부 연방정부 혜택 요율은 \$1066.00 이었고 2014 년에는 \$1082.00 그리고 2015 년과 2016 년에는 \$1100.00 이었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날짜: _____

사회보장국
지구 사무소

제목: _____ 아동명: _____

아동의 SS 번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본인은 (우리는) 상기 아동의 부모입니다. 이 문서는 _____의 소득 변경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이 소득 변경으로 저의 (우리) 아동의 생활보조금 수표 금액이 변경된다면, 제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본인은(우리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이 신고서의 계산이 사실이며 정확하고 첨부된 사본은 원본의 정확한 사본임을 서약하거나 선언합니다. 상기 명시한 날짜와 장소에서 서명.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근로소득

급여기록/급여명세서 복사본 첨부;

원본은 연례 검토 시 사회보장국이 검수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고용주: 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

비근로 소득

소득원: _____ 수령금액/일자 \$ _____

주

¹ 사회보장국은 생활보조금의 목적으로 양부모의 소득 및 재원을 포함하지만, 캘리포니아주 Medi-Cal (메디케이드) 기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42 미국 법전 절 1396a(a)(17)(D). 아동의 경우, Medi-Cal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소득 및 재원만을 봅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양부모의 소득 및 재원 때문에 생활보조금의 자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노인 및 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연방 빈곤 수준 (A&D FPL, Federal Poverty Level program for aged and for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프로그램 하에 있는 Medi-Cal 을 신청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자녀가 노인 및 장애 아동과 성인을 위한 연방 빈곤 수준 프로그램의 자격 대상이 아니라면, 노인-시각장애-장애 (ABD, aged-blind-disabled) 의료 극빈자 메디컬 프로그램하에 있는 Medi-Cal 을 신청하십시오. Medi-Cal 은 카운티 복지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규칙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귀하 자녀가 *Sneed* (법안 이름) 케이스임을 설명하십시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² 자녀의 생활보조금을 다시 받으려면,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서신을 쓰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득 감소를 신고하거나 재원이 이제 사회보장국 한도 내임을 신고하십시오. 귀하의 소득이 이제 낮거나 재원이 생활보조금 한도 내임을 보여주는 문서를 동봉하십시오. 생활보조금을 복원하도록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복원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동기 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³ 신고해야 할 사항은 소득변경만이 아닙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 416.708. 참조 귀하가 이사하거나, 장애아동 또는 비 장애아동이 다른 곳에서 살거나, 부모가 결혼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집에서 나가 살거나, 또는 장애아동이 의료시설로 이주하는 경우,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⁴ 일부 부모들에 따르면 지역 사무소에서 사회보장국은 복사본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확한 안내가 아닙니다. 소득 변경 서신에서 귀하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복사본이 원본의 올바른 복사본임을 서약해야 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⁵ 일부 가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월간 소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회보장국에서 연례 검토 시 해당 사실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때로 사회보장국에서 귀하 소득의 예상 변동에 맞게 귀하의 혜택을 조정하는 경우 이 말이 맞습니다. 주급으로 받을 경우, 어떤 달에는 급여수표를 4 번이 아니라 5 번 받게 됩니다. 격주로 받을 경우, 1 년에 2 번 급여수표를 2 번이 아니라 3 번 받게 됩니다. 연례 검토 시, 사회보장국에서 향후 연도에 대한 예상 소득 변동을 프로그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에서 소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는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소득 변경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그 결과 과다지급이 발생하면, 사회보장국은 귀하가 소득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⁶ 42 미국 법전 절 1309, 22 캘리포니아 법규집 (C.C.R.,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절 50555.1. 5 페이지의 사례 A 에 나오는 애플 가족의 경우, 다른 2 명의 아동들은 무소득을 토대로 Medi-Cal 의 자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모 모두 일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자격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부모의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실직 상태이거나 불완전 고용된 경우 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모는 또한 Medi-Cal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정내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가정내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우선 선택 옵션 때문에 생활보조금에 대한 아동의 재무적 자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가구 내 다른 사람의 Medi-Cal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⁷ 귀하가 자영업자라면, 사회보장국에 조정 후 총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10(b).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금년도 총 수입에 관한 정보를 사회보장국에 제출하십시오. 사회보장국에서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금년도 총 수입에 관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사회보장국은 귀하의 전년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금년도 조정 후 총소득을 추정합니다. 전년도 총 수입이 \$40,000 이었으나 조정 후 총소득(미국세청이 허용하는 사업공제 이후 과세 대상 소득)이 \$18,000 또는 총 수입의 45%라면, 사회보장국은 올해의 조정 후 총소득이 올해의 총 수입의 45%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영업 소득은 연간

기준으로 결정된 후,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11(b)에 의거 12 개월에 대해 균일하게 분할되므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조정에 따른 추정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액은 직원을 포함한 자가 지원에 필요한 자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2 미국 법전 절 1382b(a)(3). 여기에는 재고, 컴퓨터, 농장 장비와 가축, 농지, 별개의 사업용 은행 계좌, 건물, 어선, 업무상 필요하거나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⁸ 일부 고용주들은 미국세법의 (Internal Revenue Code) 절 125 에 의거 직원이 보육이나 보건에 대한 지출을 위해 특별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플랜을 운영합니다. 이 플랜은 "카페테리아 플랜" ("cafeteria plans")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좌에 확보되어 제한적 혜택에 사용된 자금은 이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04.1054.

생활보조금 목적의 총 근로소득은 총소득에서 카페테리아 플랜에 예치한 자금을 차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은퇴 계좌에 예치된 수입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부모의 은퇴 또는 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은 해당 아동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자원입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202(b). [“본 문서로 돌아가기”](#)

⁹ 소급 월간 회계(1-2 페이지 참조) 때문에, 11 월과 12 월에 받은 소득에 대한 계산은 다음 년도에 대한 연방정부 혜택 요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1 월과 2 월에 받은 생활보조금 수표가

전년도 11 월과 12 월에 받고 인정된 소득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문서로 돌아가기”](#)

¹⁰ 연간 및 월간 최대한도는 매년 연간 생활비 공제 비용
금액만큼 상승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12(c)(3)(B).
이 규정에서는 근로소득 공제의 목적에 대해 아동 또는 청년이
학생인 경우를 판단할 때 장애에 대한 유연성과 편의사항을
제공합니다. 20 미국연방규정집 절 416.1861.

이 규정과 법전은 일반 공공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www.ssa.gov.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 오른쪽의 “사회보장국
프로그램 규칙”을 클릭하십시오. [“본 문서로 돌아가기”](#)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 후원을 받습니다.
자금 후원처의 전체 목록은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을 참조하십시오.